

공 제 금 청 구 서(근재,배상책임,기술,특종)

1. 계약사항 및 보상안내 받으실 분

공 제 종 목			증 권 번 호			휴 대 폰			
공 제 계약자	계약자명			사업자번호			일반전화		
	담당자명			연락처					
보 상 관 련 안 내 처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※반드시 한가지 방법은 선택해 주세요								
	팩스, 주소, e-mail 중 선택정보 기재 :								

2. 사고개요 (재물 배상책임 신용 기타 ※ 해당사고유형 선택)

사 고 일 시			사 고 장 소		
사 고 내 용 (6하원칙)					
피해자(배상책임)	성 명			연락처	

3. 다른 보험(공제) 계약사항 (있음 없음)

가입회사			가 입 금 액 (보상한도액)		
------	--	--	--------------------	--	--

※ 금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보험(공제)계약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4. 공제금 수령계좌

청 구 자 격	은 행 명	계 좌 번 호	예 금 주	사업자번호
<input type="checkbox"/> 피공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피해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피공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피해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

※ 필요서류 : 통장사본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조회,제공 동의서 및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기타서류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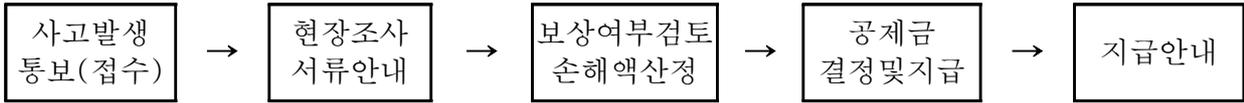
- 본인(당사)은 뒷면의 “공제금 지급절차 정보안내”등을 통하여 보상절차에 관한 일체의 정보 (담당부서 및 연락처, 예상심사기간 및 지급기일등)를 설명받고 이에 대해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아울러 상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귀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하며, 만일 관계법령 및 공제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공제금 일체를 반환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청 구 자	피공제자의 [] 상호(성명)	Tel.	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(뒷면)

□ **공제금 지급절차**



□ **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**

- 손해사정을 위해 사고현장, 병원, 피해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(방문)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- 조합이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며,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.

□ **의료심사**

근재, 배상책임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공제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단서,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

□ **비례보상 및 중복보험**

- 공제종목 및 특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공제(보험)계약이 있는 경우 중복보험 처리 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.

□ **가지급 공제금 안내**

조합은 보상하는 사고의 손해사정이 늦어지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에 따라 추정 지급공제금의 50%내에서 공제금을 가지급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담당 손해사정사나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예상 지급기일**

재물, 배상책임사고는 최종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이며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□ **공제금 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**

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,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□ **공제금 지급안내 및 조회안내**

-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조합 홈페이지(www.cgbest.co.kr)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공제계약자에 한함)

□ **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**

공제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

